

[별표 39] <개정 2019. 1. 8.>

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채정 범위(제65조 관련)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, 별정직공무원 및 특 정직공무원	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
자율채정 범위	93,097 ~ 66,498	113,045 ~ 66,498